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4. 6. 28.>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이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이 출제에 참여하는 등 대학수학 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과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학생 선발 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인의 핵심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부정청탁					
거.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너.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비고 제5호의2에 따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